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5. . . (제 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조례 제·개폐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결산일정이 변경되고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 검사 과정 및 정례회 일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개폐 청구인명부 작성 시 기재사항 개정(제14조제1항제2호)

-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제54조제1항)

- 1)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변경

다. 결산 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제83조제1항 및 제4항)

- 1) 검사위원 수를 시·도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
- 2)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1명 이하로 함
- 3)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라. 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84조제1항 및 제4항)

- 1) 결산 검사 대상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 2) 결산 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일본식 표현 법령용어 정비(별표 1, 2, 3)

- 1) ‘사리채취단속’을 ‘자갈채취단속’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년월일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6월·7월”을 “5월·6월”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5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1명 이하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8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재정법 제51조의2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8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결산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중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아.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아.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 봉안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 봉안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별표 1의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의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의 시·도사무 중 “8)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를 “8) 하천감시(자갈채취단속 등)”로 한다.

별표 2의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중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한다.

별표 3 중 14.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나.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다. 시체운반업의 허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생 략) 2. <u>주민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u> <u>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생년월일</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u> <u>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u> <u>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u> <u>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u> <u>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u> <u>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 ⑦ (생 략)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6월 · 7월</u> 중에, 제 2차 정례회는 11월 · 12월 중에 열 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 10월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 ----- <u>5월 · 6월</u> ----- ----- ----- -----.

중에 열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 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신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 12명

----- 6명 -----

-----.

② -----

1명 이하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

-----.

1. 결산개요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신 설>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지방재정법 제51조의2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결산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11